

노동부 장관, 택배 물류센터 야간 불시점검

- 택배 상·하차장 등 야간작업 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31일(금) 20:00 경기도 파주시 소재 ○○ 택배 물류센터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 신고

이번 점검은 정부가 계속되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낮 동안 축적된 열기와 높은 습도가 야간까지 이어지는 물류센터의 취약한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야간 폭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택배 상·하차장과 분류장은 노동강도가 높고 외부 열기와 물류 차량에서 발생하는 열에도 노출돼 야간에도 온열질환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택배 상·하차장과 분류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살펴보면서 ▲노동자가 실제 작업하는 장소의 체감온도 측정·기록 공정별·층별 온·습도계 설치 현황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부여 ▲냉방·환기설비 가동 시원한 물과 얼음 및 보냉장구 제공 여부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작업중지·응급조치·119 신고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택배 물량과 작업속도에 관계없이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멈추고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휴식이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경우 작업시간 조정·작업 단축·작업중지 등 단계별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점검 결과, 상·하차장 및 분류장 등 주요 작업장소 온·습도계가 설치되지 않아 공정별 체감온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고, 작업장 인근에 냉방에 가능한 휴게시설도 마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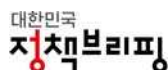
김영훈 장관은 “해가 저물었다고 폭염이 끝난 것은 아니며, 물류센터는 야간에도 온열질환 위험이 계속된다”라며, “실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노동자가 작업을 멈춰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속에서 택배 물량과 작업속도가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 할 수는 없는 만큼, 확인된 위험은 즉시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작업시간 조정과 작업 중지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물류·유통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주·야간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이근배 (044-202-8882)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과 장	신백우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박현건 (044-202-8891)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모국어 번역본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선풍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체감온도 계산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단계적 증가
- ❑ 주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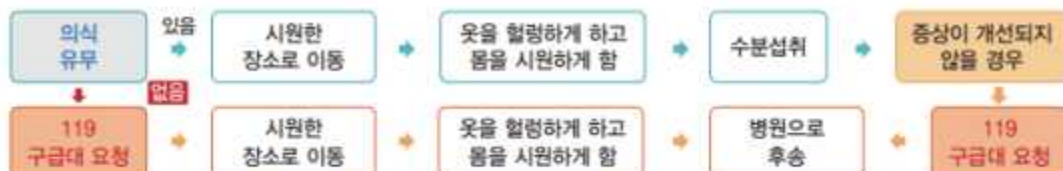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 온열질환 증상

-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 밀폐공간은 '질식사 사망 위험공간'입니다. 폭염 시 매우 위험합니다.

- ❑ 밀폐공간(탱크·저장용기의 내부, 맨홀 등)은 기온 상승 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장소'입니다.

반드시 「질식사 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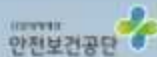
- 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② 작업전·작업중 지속적인 환기
- ③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 질식사 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25.12.1) 주요내용

- ❶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 ❷ 측정결과 기록·보존
- ❸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 ❹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교육 강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